

#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도 해설

## 목 차

- I. 창업지원 기본방향 및 체계
- II. 창업지원 주요내용
- III. 창업의 범위
- IV. 창업절차 간소화
- V. 창업자금 지원
- VI. 세제지원
- VII. 창업관련 용역지원

〈이번호에 全載〉

## I. 창업지원 기본방향 및 체계

### 기본방향

- 기술집약형 창업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의 획기적 지원
-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지원·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자 지원
- 창업절차의 대폭 간소화
-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
  - 창업지원기금 설치, 세제지원, 절차간소화, 상담, 정보제공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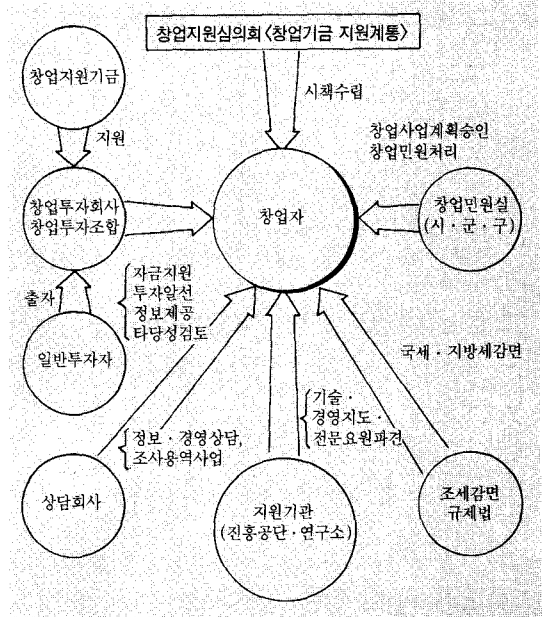
### 지원체계

## II. 창업지원 주요내용

- '86. 5. 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

### 절차간소화

-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·허가사항의 제처리 (One-Stop Service 체제)
- 창업민원실 설치운영 (275개)



### 자금지원

-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지원
  - 창업자에 대한 무담보 투자지원
  - V.C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중점지원
-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지원
  - 일반유휴자금의 산업자금화 → 창업자투자 지원
- 일반창업자금 융자지원
  - 창업조성자금
  - 중소기업은행·국민은행 창업자금

### 세제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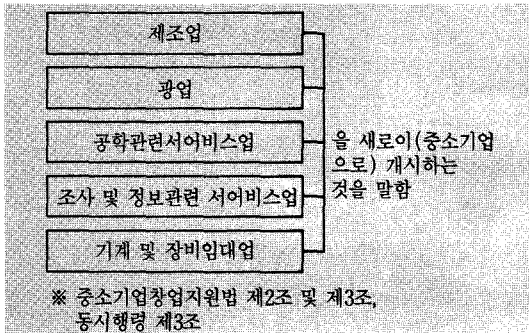
- 국세 및 지방세 감면
  - 법인세, 소득세, 등록세, 취득세, 재산세 (2~5년간 30~100% 감면)

### 기타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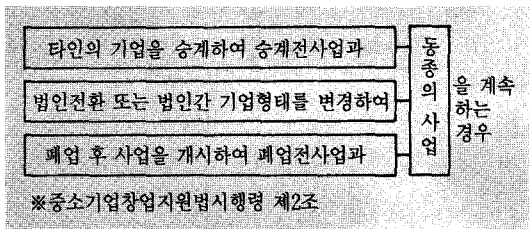
○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용역지원  
-사업타당성 검토 및 경영기술지도 등 용역 제공

### III. 창업의 범위

#### 1. 창업지원법상 창업



#### 2.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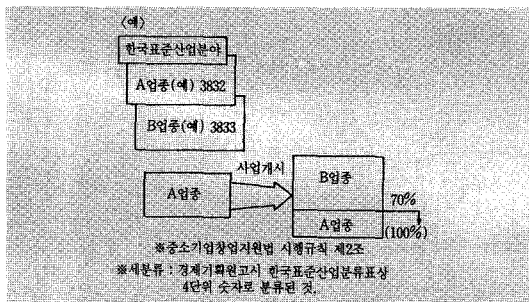


#### 3. 동종사업의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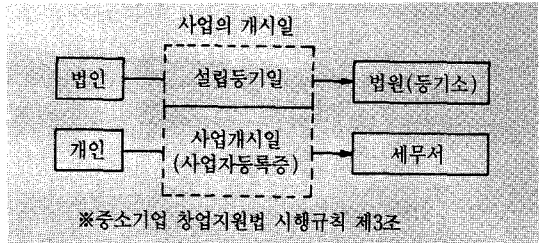
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함.  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

#### 4.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

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당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



#### 5. 사업의 개시일(창업일)



### IV. 창업절차 간소화

#### 1. 제도개요

○중소기업창업시 공장설치에 따른 복잡한 인·허가절차 등을 일괄처리제도(one-stop-service)를 통해 간소화함으로써 창업촉진을 유도

#### 2. 제도의 목적 및 관련근거법

##### ○목적

-과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된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 
-특히 종래에는 창업민원인이 창업에 따른 인·허가를 받기위해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, 절차간소화로 이러한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대폭절감

○근거법 :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2조

#### 3. 지원대상

##### ○대상업종 및 창업자

##### -업종

한국표준산업분류	업종
2	광고업
3	제조업
8,422	공학관련서비스업
843	조사 및 정보기관 서비스업
845	기계 및 장비임대업

##### -창업자

##### ●농어촌 지역 : 모든 창업자

※ 농어촌 지역의 범위 :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→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('90. 4. 7)

●농어촌 이외 지역 및 수도권 :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

※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 :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.

○주요내용

-창업사업계획 승인기관 : 시장, 군수, 구청장

-승인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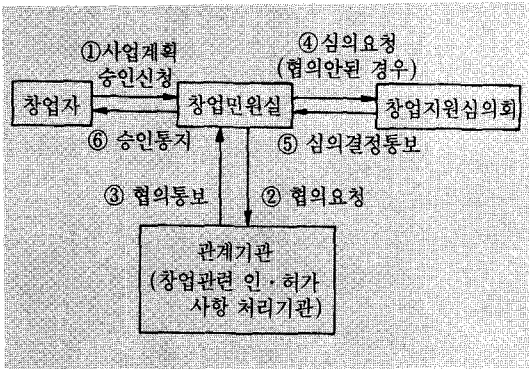
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→관계기관 의견협의→사업계획승인 (시·군·구)

-사업계획 승인효과 :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·허가절차 생략

※ “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” 제정('91. 1. 13 시행)으로 의제처리 범위확대 : 23개 법률 45개 인·허가 절차

#### 4. 지원절차

○지원절차



○필요한 서류작성방법 : 창업민원실에 비치된 창업사업계획서를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

○관련기관 및 담당부서

-시·군·구청 창업민원실 : 서류접수, 소관사항, 결정, 타행정기관 소관사항을 협의(시·도창업민원실 또는 관계부처),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

-시·도 창업민원실 : 시·도지사 소관사항에 대한 협의결과 결정 및 통보(시·군·구 창업민원실에)

-중앙행정기관 : 소관 사항에 대한 협의결과 결정 및 통보

#### 5.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관리

○창업사업계획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, 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권고기간을 두어 사업계획변경 또는 공장건설착공 권고

○권고기간내에 불이행시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함.

### V. 창업자금지원

#### 1. 투자지원(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)

○성격

-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자에 대한 무담보, 무이자, 무보증의 자금지원 제도

-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인수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,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,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조속한 성장을 지원

-창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가 금지되고 이윤발생시 지분에 따른 이윤분배

○관련근거

-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, 13조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준칙, 창업투자조합운영 및 관리요령 제칙

○지원대상 및 업종

-지원대상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설립 후 5년이내의 창업자(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인)

-업종 : 제조업, 광업, 공학관련 서비스업, 조사정보관련 서비스업, 기계 및 장비임대업.

○지원방식 및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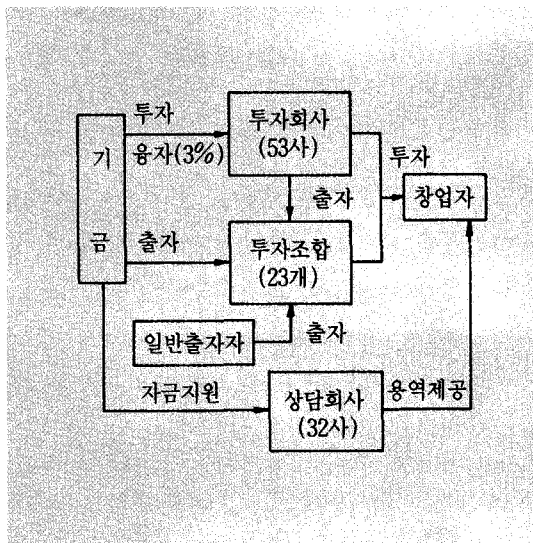
-주식인수 : 의결권주의 50%이내(상공부 장관 승인시 50%초과 가능)

-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: 주식인수 총액의 50%이내

-약정투자 : 투자회사가 창업자간 약정에 의해 투자조건을 결정

※ 주식인수업체에 대한 단기자금대여 병행

지원 가능



2. 융자지원(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중 창업 조성자금)

○성격

-창업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자금융자 등 지원

○관련근거

- 중소기업진흥법 제11조
- 중소기업 육성관련 통합고시 제4장
- 창업조성 지원사업 추진요령(중소기업진흥공단)

○지원대상

-설립 후 1년 이내의 중소기업 창업자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다음 업종 또는 분야를 영위하는 자

• 우선육성업종, 지정계열화품목, 취약기술업종

- 수입대체 또는 수출유망품목
- 신기술·신제품분야

〈우선지원대상〉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자.
-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자.
-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 품목의 사업을 하는 자.

- 특허와 실용신안을 기업화 하는 자.
- 상공부 장관이 기술개발 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하는 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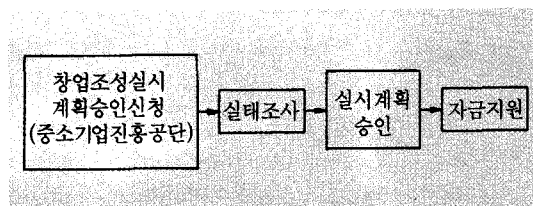
○지원내용

-자금지원

구분	지원액	지원조건
시설자금	3억원이내(소요자금의 90% 이내)	8년(3년거치) 연리 9%
운전자금	1억원이내(소요자금의 70% 이내)	3년(1년거치) 연리 9%

-시설대여, 경영 및 기술지도, 연수, 정보제공

○지원절차



3. 보증지원

기술창업보증

○성격

-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
- 창업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별도 간이심사제도 운용

• 근거 : 신용보증 기금법

○지원대상 : 설립 후 1년 이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〈아래의 기술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〉

- 공업소유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) 보유자
-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보유자
- 국·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자
- 기술사, 기사 1·2급, 기능사 1급 해당자
-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
- 중소기업 창업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자

○지원요건

-운전자금 : 사업자 등록증 소지, 제조업 영위기업으로 설립 후 1년이내, 기술요건 충족 또는 신기술 사업계획승인, 경력 및 생산설비 보유

-시설자금 : 사업장 부지확보, 사업자 및 당해시설이 주담보 후취되어 보증우선해지, 후취담보 평가예상액 감안 담보대출 비용이 100% 미만

○보증한도

구 분	보증액 (동일업체당)	보증료
운전자금	1억원이내	연 1%
시설자금	3억원이내	연 1%

기술신용보증

○성 격 :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

○근 거 :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

○지원대상 : (정책시책부문 보증)

정부의 시책에 의거, 지원되는 아래의 각종 자금 및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시책부문 보증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보증지원하고 있으며, 동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심사기준 저촉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증 지원

-당기금선정 우량기술기업

-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(타기관 선정포함)

-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의거, 지원되는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

-국민투자기본법에 의거, 지원되는 국민투자자금 중 기술개발자금

-공업발전법에 의거,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(기계공업진흥회 등 사업자단체 배정자금)

-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,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(중소기업 진흥공단 배정자금 및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의 자체지원자금)

-농어촌소득원 개발추진법에 의거, 지원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(에너지 관리공단 배정자금)

-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의거, 지원되는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등

○보증한도 : 15억원

○지원절차 : 기술창업 보증절차 참조

4.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투·융자

○지원대상

-기업의 연구개발(자체 및 위탁)을 위한 사업

-연구개발성과, 발명기술 및 도입기술의 최초 기업화를 위한 사업

-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조화, 개량사업

-신개발 제품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설을 위한 사업

-제조공정개선 및 기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

-고도의 기술과 장래성이 있는 기술집약형 사업

○지원내용

-신용 및 일반융자

●융자한도 : 건당(동일인당) 5억원(150만불)이내, (소요자금의 80~100%)

●융자기간 및 금리 : 3년거치 8~10년이내 상환, 연리 12~12.5%

-조건부융자

원리금 상환에 대신하여 사업경영결과 발생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실시료를 징수하고 사업실패시 최소상환금만 회수

-투자

●투자방식 : 주식투자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인수

●투자한도 : 발생주식의 50%이내, 5억원이내

Ⅶ. 세제지원

1.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

○대상 :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

○소득세·법인세 : 창업일이 속하는 년도 및 그 다음년도로부터 3년간 면제, 그후 2년간 50% 감면(조감법 제15조)

## 新年特輯

※ 다만 수도권지역은 창업 후 3년간 50%, 그후 2년간 30% 감면

○등록세·취득세: 창업일로부터 2년간 50% 감면(조감법 제84조 제2항, 제85조 제2항)

○재산세: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% 감면(조감법 제85조의 2)

### 2.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(투자회사 및 투자조합)에 대한 조세지원

○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,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10% 분리 과세(조감법 제5조)

○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10% 분리 과세(조감법 제5조)

○의제배당소득 비과세(조감법 제6조 제3항)  
○주식양도 차익의 익금불산입(조감법 제18조의 2)

○투융자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: 투융자액의 50%(조감법 제54조)

○창업투자회사가 대도시에서 법인등록시 등록세 5배중과규정의 배제(내무부 고시 제14호: 86. 9. 27)

○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출자금을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인정, 손금에 산입(조감법 제16조)

## Ⅷ. 창업관련 용역지원

### 1. 제도개요

○전문용역 기관인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창업

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창업을 유도

—용역비의 50%까지 창업지원기금에서 보조

○경영능력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용역제공으로 건실한 성장을 지원

### 2. 관련근거법규

○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2조(중소기업 상담회사)

○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

### 3. 지원내용

○지원기관: 중소기업 상담회사

—일정요건을 갖추어 상공부에 등록된 경영 컨설팅전문회사

—상담회사 업무

-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
- 경영·기술지도
- 창업자금 및 사업알선
- 공장입지 및 세제지원 상담 등

○지원대상

—중소기업 상담회사로부터 사업성 검토 용역을 받아 창업한 자

—중소기업 상담회사로부터 사후관리용역(경영·기술지도, 사업확장에 따른 사업성 검토 등)을 제공받은,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

○지원액: 용역비의 50%까지 창업지원금에서 보조(500만원 이내) <♣>

案

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

內

本會는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를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(KOEX)別館 2층 發明獎勵館內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많은 活用바랍니다.

문의전화: (서울)551-5571~2